

1. 개정이유

현행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」상 자동차와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,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은 이동판매는 허용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주유소에서 직접 주유해야 함.

다만, 공항 등에서 운행하는 특수한 차량 등 「도로법」상 도로 진출이 불가하고, 차량의 이동성이 극히 제한되는 경우에는 이동판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

이에 따라, 이동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함

2. 주요 내용

가. ‘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제외한다’는 규정을 삭제하여 조문 단순화 (제2조의2제1항 개정)

나. ‘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덤프트럭,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7호에 해당하여 도로법상 도로 진출이 불가하고, 이동성이 제한되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동판매를 허용(제2조의2제3항 신설)

3. 의견 제출

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(아래 보내실 곳 참조)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(www.motie.go.kr → 행정정보공개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라. 보내실 곳

- 주소 : (30118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

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

- 전화 : 044 - 203 - 5223

- 팩스 : 044 - 203 - 4762

- 이메일 : rnjswns37@korea.kr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의2 (이동판매 및 배달판매) ① 영 제2조제3호 후단, 제4호 후단 및 제9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의 방법은 적재용량 5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[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(「도로법 시행령」 제7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제외한다)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. ② (생략) <신 설>	제2조(정의) ① (현행과 같음) 영 제2조제3호 후단, 제4호 후단 및 제9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의 방법은 적재용량 5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[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((「도로법 시행령」 제7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제외한다))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. 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,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7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덤프

프트럭, 콘크리트믹서트럭 및
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7호에
해당하여 도로법상 도로 진출이
불가하고, 이동성 제한 등에 따라
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차
량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실소비
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동
판매를 허용한다.